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종합건설사업자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하고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5. 19.

경 상 북 도 지 사

1. 처분 내용

업체명 (대표자)	업종 (등록번호)	소재지	처분사유 (공사명)	처분내용	처분근거
주식회사 제스코 (박진성)	건축공사업 (16-1055)	경상북도 경산시 성암로 10 협화타운상가 201호	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 위반 (경산00부대 본청 내진보강공사 중 철거공사)	과태료 (금600,000원)	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99조 제3호
주식회사 수오종합건설 (허규빈)	건축공사업 (10-2802)	경상북도 경산시 성암로21길 4-2	기재사항 변경신고 지연	과태료 (금120,000원)	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100조 제1호
미르건설(주) (이승훈)	토목공사업 (16-1016)	경상북도 경산시 옥실길 6-15	기재사항 변경신고 지연	과태료 (금120,000원)	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100조 제1호

2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도시계획과(054-880-391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